##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2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임오경·서영교·한민수

민병덕 · 차지호 · 문정복

김남희 · 김재원 · 위성곤

강선우 • 윤후덕 • 김동아

의원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허용 대상은 하위명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유사 지정제도인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건축물의 이축(移築) 행위가 제외되어 있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이축(移築)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u> 등</u> )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	
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	
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u>대통</u>	<u>o</u> ]
<u>령령으로</u> 정하는 행위에 한정	축(移築) 등 대통령령으로
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	
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